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5. 16. ~ 5. 24.)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19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7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3. 5. 24.)
사회문화 위원회 (4)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유순옥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제용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찬성 의원	원안가결
경제산업 위원회 (4)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홍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기철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원안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재민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김기하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기찬 의원	수정가결
교육 위원회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수정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1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5. 24.(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박관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1)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문화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등의 조사 업무와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을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②에 따른 사업 및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에 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지영 의원



엄윤순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의 정보체계 구축 총괄, 정책개발 자문, 현황조사 및 평가,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발의 : 원제웅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6)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태권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태권도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운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도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수도물 절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등은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축물·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건축물·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전찬성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운순 의원



윤길로 의원



최종수 의원



홍성기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 공동발의 :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진중호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양양)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지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공유기반 시설 조성, 창업 교육 및 지원,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또는 교육·혁신·연구기관 유치,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및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유통·활용 등에 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건강정보를 공유·축적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개인건강정보 수집·관리·활용 등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바이오헬스산업 성과평가 및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도가 출자·출연한 연구·기업지원 혁신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김기홍 의원



박대현 의원



박윤미 의원



진종호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기철 의원(경제산업위원장·국민의힘·정선)

■ 공동발의 : 박찬홍 의원(경제산업위원회·국민의힘·춘천7), 이무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국민의힘·춘천4), 이한영 의원(경제산업위원회·국민의힘·태백1)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디지털화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생명연구자원 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김기철 의원



박찬홍 의원



이무철 의원



이한영 의원

▣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국민의힘·원주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을 입법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조례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규정을 재기재한 부분을 정비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 : 박윤미 의원(경제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지원사업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 우대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원주4)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4)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부장으로,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반장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법 제13조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④ 도(남성·여성)연합회장의 임기는 소방서(남성·여성)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며, 소방서(남성·여성)연합회장의 임기는 도(남성·여성)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만큼 연장된다.



이지영 의원



최재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 발의 :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해2)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및 주차 편의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④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자는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용어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이기찬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양구)

■ 공동발의 : 류인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회 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할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할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②에 따른 기관 및 시설(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외한다)과 ③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기찬 의원



류인출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박길선 의원(교육위원장 · 국민의힘 · 원주1)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및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재웅 의원



박길선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 공동발의 : 이승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김용래 의원



이승진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